

정관



위 드



Wholistic Interest Through Health

사단법인 위드(WITH) 정관

최초제정	2006년 5월 8일
1차개정	2007년 3월 21일
2차개정	2010년 3월 15일
3차개정	2011년 2월 19일
4차개정	2020년 4월 28일
5차개정	2024년 4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위드 (이하 “본 회”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Wholistic Interest Through Health (약칭 WITH)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사랑과 나눔의 정신에 입각하여 빈곤, 기아, 재해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의 긴급한 필요인 구호와 구제활동을 함과 동시에 지속적 지역역량 개발 및 식생활 영양개선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시에 국내외에 지부 및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개발 사업: 대상지역의 역량 개발, 자립과 갱생을 위한 인력, 자금 및 시설 지원
2. 구호 사업: 재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구호금품 제공 및 구호 인력 파견
3. 구제사업: 빈곤, 기아를 당한 사람들에게 영양공급, 구제품제공 및 전문인력 파견
4. 식생활영양개선사업: 식생활 영양, 위생, 보건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및 전문인력양성
5. 교육 사업: 구호, 개발, 문화분야등의 전문가교육과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교육
6. 연구 사업: 영 유아, 모성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지원
7. 국제 식문화 교류 사업: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식문화 관련정보 및 사업 교류 활동
8. 홍보 및 출판 사업: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및 간행물 출판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련된 제반 활동

제 5조 (수익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및 제4조의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호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가. 해외 저소득층이 소득증대사업으로 제작한 제품과 상품을 국내외 판매 및 수출입 하는 사업
 - 나. 홍보제작물의 판매 및 도서출판사업

- 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
2. 제1항 수익사업에 의한 순이익금은 본회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거 특정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후원회원: 본회의 사업목적을 이해하여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단체
3. 특별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제7조 (회원에 관한사항) 회원의 입회절차, 회비, 회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결의로써 별도로 정한다. 단, 회원의 탈퇴는 어떤 조건에도 구애 받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 기구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 사 5명이상~10인 이내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2인 이하

제9조 (임원의 임기)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기 만료된 임원은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차기 총회 시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직무)

1.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 이어야 하며,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며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2. 이사장: 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며 총회와 이사의 의장이 된다.
3. 상임이사: 이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내외 업무관장 및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가. 본 회의 재산사항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나. 이사회에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가목 및 나목의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이를 보고 하는 일
 -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 마.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11조 (임원의 대우)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2조 (총회) 총회는 본 가구에 가입된 정회원 중에서 전 회계연도 최종일까지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로 구성한다.

제13조 (소집 및 통지)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전에 회의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보선의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 한 사항
6. 이사장이 부의 한 사항
7.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성원 및 결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 (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 하게 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다른 정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 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4. 회원 자신이 이해관계로 법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18조 (총회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 날인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의사록을 이회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 (구성) 본 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 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 (의결사항)

1. 보궐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 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

제22조 (성원 및 결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1.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 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 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 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4. 이사 자신과 이해관계로 법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25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하며, 의장과 의장이 지명 하는 2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제명) 이사가 고의로 의무를 행치 아니하거나 본 기구의 사업을 저해하며 본 기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6 장 자 문 위 원

제27조 (자문위원)

1. 본 기구는 필요에 따라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 조의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의장이 위촉하고 해임한다.

제 7 장 재산 과 회 계

제28조 (재산) 본 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제29조 (재산의 관리) 본회의 기본 재산을 매각, 양도, 증여 대체 및 담보의 제공, 처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재산수익 방법) 본회의 사업 및 통상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 사업의 이익금, 회원의 회비, 정부보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31조 (예산 및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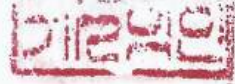
1.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을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 하여 이사회를 거쳐 정기 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회계연도 중 추경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결산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 잉여금은 이월 손실을 보전 하고 잔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목적사업에 부응 하는 특정한 기금으로 전입 할 수 있다.

제33조 (회계감사) 감사는 년 1회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기 감사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5조 (기부금) 기부금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8장 운영본부



제36조 (설치)

1. 본 회의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본부를 설치한다.
2. 운영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업무총괄) 운영본부 업무는 상임이사가 총괄한다.

제38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운영본부를 관장 하고 사업을 집행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제9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9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 재적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하여야 한다.

제41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10장 보 칙

제42조 (서면결의)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 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사항 이외의 안전에 대하여는 서면 결의 할 수 있다.

1. 재산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제43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교통상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정관은 현재 본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정관임을 확인합니다.



2024 년 4 월 30 일

단체명 : 사단법인 위드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2길 47(서교동)